

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안내문

코로나-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4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26조에 의거하여 급여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

따라서, 해당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정보게시 내용 >

게시 항목	게시 위치
① 기본정보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	▶ 장기요양정보시스템 → 요양자원 → 장기요양 기관관리 →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기본 정보 탭
② 보험가입 여부 - 전문인배상책임보험(전체기관 단 복지용구사업소 제외) - 손해배상책임보험(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책임 보험으로 기관기호 1, 2로 시작되는 기관만 해당)	
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	▶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공지사항 탭에 계약사항을 게시 → 기본정보 탭에 게시 여부(N/Y) 등록
④ 정원·현원	▶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정원·현원 탭
⑤ 비급여 항목별 비용	▶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비급여항목 탭
⑥ 프로그램 운영정보	▶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프로그램운영 탭
⑦ 사진(시설의 구조, 설비 상태 및 건물전경 등)	▶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사진첩 * 나의 블로그에서 입력에서 '22.2.25.~ 변경
⑧ CCTV 설치 현황(임의 게시항목)*	▶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CCTV 설치 현황

*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·관리 의무화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신설('21.12.21. 공포, '23.6.22. 시행)

※ 신설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지체 없이 기관정보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2.

국민건강보험공단

□ 법령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제69조제1항제2의2호

제34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
-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**급여 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**
-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, 방법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(과태료)

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2의2. **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**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

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
-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시설의 구조, 설비 및 상태 건물 전경 등의 사진
 2. 장기요양기관의 주소, 약도,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
 3.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,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연수, 입소(이용)정원 및 현재 입소(이용)인원
 4.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
 5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 6.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
 7.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
 8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
-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

○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

제34조의3(보험가입 의무)

-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 1.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 2.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범위, 내용,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

□ **급여종류별 정보게시 항목**

급여종류	게시항목
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·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(8종)	① 기본정보 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 ② 보험가입여부(손해배상책임보험**, 전문인배상책임보험)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정원·현원 정보 ⑤ 비급여 항목별 비용 ⑥ 프로그램 운영 정보 ⑦ 사진 ⑧ CCTV 설치 현황(임의 게시항목)*
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(4종)	① 기본정보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 ② 보험가입여부(손해배상책임보험**, 전문인배상 책임보험)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사진
복지용구 (4종)	① 기본정보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 ② 보험가입여부(손해배상책임보험**)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사진

*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·관리 의무화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신설('23.6.22. 시행)

**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'1' 또는 '2'로 시작하는 기관만 정보게시 대상